

성평등상담실운영규정

2004.12.24.제정 2011.07.01.일부개정 2012.08.01.일부개정 2012.10.10.일부개정
2017.11.27.일부개정 2020.04.01.일부개정

<인권센터>

제 1 조 (명칭) 본 상담실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성평등상담실(이하 “본 상담실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(개정 2011.7.1., 2012.8.1., 2017.11.27.)

제 2 조 (목적) 본 상담실은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1.7.1.)

제 3 조 (소재) 본 상담실은 학생상담센터 내에 둔다. (개정 2017.11.01.)

제 4 조 (업무) 본 상담실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1.7.1., 2017.11.27.)

1. 성희롱,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2. 성희롱, 성폭력 사건의 처리요청
3. 4대폭력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) 예방 교육 및 홍보
4. 기타 성평등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삭제 2011.7.1.)

제 6 조 (삭제 2011.7.1.)

제 7 조 (조직) ①본 상담실에는 실장과 상담원을 두며, 실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겸한다. (개정 2011.7.1., 2012.8.1., 2017.11.01.)

②상담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의 구성은 “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”의 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한다. (개정 2011.7.1., 2012.10.10., 2017.11.27.)

③(삭제 2011.7.1.)

④(삭제 2011.7.1.)

⑤(삭제 2011.7.1.)

제 8 조 (삭제 2011.7.1.)

제 9 조 (재정) 본 상담실의 재정은 교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 (회계년도) 본 상담실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다.

제11조(개인정보보호) 본 상담실은 내담자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상담 목적 외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.

[본조 신설 2020.4.1.]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